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보정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두 *래	두 *래 1964-09-05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51번길 (보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0-12